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국 가 유 공 자 등 예 우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세균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퍼센트 인상하고, 보상금 인상에 따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도 연동하여 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과 4·19혁명공로수당의 월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고,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월지급액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퍼센트 인상하되,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77천원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을 가족의 수 및 생활수준별로 각각 3퍼센트 인상하며, 전상수당을 67천원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09. ~ 1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2항제1호 중 “230만5천원”을 “237만4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59만4천원”을 “164만2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97만1천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27조의4 본문 중 “33만1천원”을 “35만1천원”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상수당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전상군경	90
---------	------------------------------	----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및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6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상수당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전상군경	90
---------	------------------------------	----

8.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가. 1급 1항 나. 1급 2항 다. 1급 3항	2,374 1,642 1,000
--------------------	--	-------------------------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급 1항: 263만1천원
2. 1급 2항: 253만2천원
3. 1급 3항: 243만4천원
4. 2급: 84만1천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4의2 제3호,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별표 6의2,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4]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1급 1항	3,165	5급	1,650
1급 2항	2,985	6급 1항	1,506
1급 3항	2,857	6급 2항	1,386
2급	2,540	6급 3항	930
3급	2,374	7급	496
4급	1,992		

2.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38만6천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구분	월 지급액(천원)
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1,668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933
3) 부모 또는 조부모	1,638
나.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1,446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678
3) 부모 또는 조부모	1,422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530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766
3) 부모 또는 조부모	503

비고: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자 1명당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5]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25조 관련)

구분	월 지급액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가족이 1명 이하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28만3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5만2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2만원 2. 가족이 2명 이상 3명 이하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28만3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5만2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2만원 3.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33만6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30만5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7만3천원

비고

1.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구당 가계지출비용”이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추계한 비용을 말한다.
3.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별표 5의2]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 관련)

구분	지급기준	월 지급액 (천원)
1. 상시 간호수당	가.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이등급 1급 2항 4116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상이등급 1급 3항 4202호 및 510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介護)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631
2. 수시 간호수당	가. 상이등급 2급 4108호, 4203호 및 510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시 지급 대상이 아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별표 3 제9호에 따른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1급이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등급 2급 또는 상이등급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1,755

[별표 5의4]

무공영예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2 관련)

구분	월 지급액(천원)
1. 태극무공훈장	420
2. 을지무공훈장	415
3. 충무무공훈장	410
4. 화랑무공훈장	405
5. 인헌무공훈장	400

[별표 5의5]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3 관련)

지급 구분	월 지급액
1.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1,387천원 위로가산금: 80천원
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1,180천원
4.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347천원 추가지원금: 114천원(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비고: 보상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금을 말한다.

[별표 6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천원)
1급 1항	1,386	3급	988
1급 2항	1,386	4급	606
1급 3항	1,386	5급	264
2급	1,154	6급 1항	120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구분	월 정지금액 (천원)
가.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82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547
3) 부모 또는 조부모	252
나.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유족	
1) 배우자	60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292
3) 부모 또는 조부모	36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의 유족	
1) 배우자	34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270
3) 부모 또는 조부모	7

비고: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자 1명당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에 해당하는 월 정지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정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① (생 락) ② 법 제16조에 따른 중상이부 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 는 사람: <u>230만5천원</u>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 는 사람: <u>159만4천원</u>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 는 사람: <u>97만1천원</u>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u>237만4천원</u> 2. ----- ----- <u>164만2천원</u> 3. ----- ----- <u>100만원</u>
제27조의4(4·19혁명공로수당) 법 제16조의4에 따른 4·19혁명공 로수당의 지급액은 월 <u>33만1천</u> <u>원</u> 으로 한다.	제27조의4(4·19혁명공로수당) - ----- ----- <u>35만1천</u> <u>원</u> -----.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 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10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 치) ① ----- ----- ----- ----- -----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국가유공자,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제23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지급 구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구분	지급 대상	월지급액 (천원)
1. ~ 5. (생 략)		
6. 전상수당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전상군경	23
7. (현행과 같음)		
8.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가. 1급 1항	2,305
	나. 1급 2항	1,594
	다. 1급 3항	971
비고 (생 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구분	지급 대상	월지급액 (천원)
1. ~ 5. (현행과 같음)		
6. 전상수당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전상군경	90
7. (현행과 같음)		
8.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가. 1급 1항	2,374
	나. 1급 2항	1,642
	다. 1급 3항	1,000
비고 (현행과 같음)		

② -----

[illegible]

1. 1급 1항: 263만1천 원
2. 1급 2항: 253만2천 원
3. 1급 3항: 243만4천 원
4. 2급: 84만1천 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20